

공정위, 정부 최초로 조직진단 결과에 근거한 『핵심기능 위주의 본부·팀제』로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05. 12. 15일부터 『핵심기능 위주의 본부·팀장제』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금번에 마련된 사무처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급제적 다계층 구조를 성과·효율·책임 위주의 수평(Flat)적 구조로 전환하여 탄력적인 조직체계 구축하였다. 현행 국단위 위주의 「1처 6국 3관」을 업무연관성이 높은 본부장 중심의 「1처 4본부 2관 2단」으로 개편하였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신고사건(경쟁·소비자보호·하도급국 소관 신고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서울사무소」를 신설하였다.

【사무처 개편 조직도】



* 위원장 직속(감사담당관), 부위원장 직속(송무팀), 사무처장 직속(업무지원팀, 종합상담실)

둘째, 기업규제적 기능 축소와 시장친화적 기능으로의 전환을 통해 공정위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였다.

조사국과 독점국을 폐지하여 각종 대기업 규제정책과 부당지원 등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였고, 독점국·경쟁국·조사국을 통폐합, 「시장감시본부」 및 「카르텔조사단」으로 재편하여 시장감시본부는 시장에서 기업들의 법위반행위(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등을 일관성 있게 시정하고, 카르텔조사단은 시장경제의 최대 공적인 기업간 경쟁을 봉쇄하는 가격담합 등 카르텔에 대한 적발 및 시정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보호국은 정책기능은 소비자본부로, 집행기능은 서울사무소로 분리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며, 경쟁국과 하도급국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능을 통합, 「기업협력단」으로 재편하여 대·중소기업간 균형 발전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심사와 송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분석 및 법률지원기능을

보강(경제분석팀, 송무팀)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신유형거래팀)와 경쟁문화 확산 및 경쟁주창기능을 강화(경쟁주창팀)하며,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지원(성과관리팀)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번 사무처 조직개편은 행자부 진단용역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정부부처 최초의 사례로서, 위원회의 비전과 역할, 시장경제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임무 달성을 추진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현재 정원의 범위내에서 공정위의 조직과 기능을 대내외 환경변화와 비전의 달성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장경제 수호자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공정위는 본부·팀장제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2월 중순까지 관련법령 개정 및 후속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05. 10. 28.부터 전기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공정위는 그간의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제정된 지 6년이 되어 변화된 하도급거래 현실과 개정된 하도급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체결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시행하였다.

동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시장에서의 불균형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시하여 추가공사를 시행할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사전에 협의·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추가공사비 분쟁 사전예방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 물가변동 기준을 도입하여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예방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중단 기간은 자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였고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가 자재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고용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유형을 반영하였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그 밖에 전기공사업법상 시공관리는 전기공사기술자가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였고, 수급사업자가 공사목적 외에 선금금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보험(국민연금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확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1점 감점하던 것을 2점 감점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은 본지 부록 (122면 이하) 참조.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05. 7. 1.부터 서비스업 종의 하도급거래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광고제작위탁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관행 개선 및 예방을 하기 위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제정하고, '05. 10. 28.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원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광고업종의 사업자들이 동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계약서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기본계약은 용역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약으로서 용역위탁을 개시할 때에 작성하고 각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용역위탁시 광고업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또한 총 6장 32조 부칙 2항으로 구성, 하도급법에 규정된 원사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명문화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이행을 확보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관계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문화하여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확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가

● · ● · ● · ● · ● · ●

해당 업계에서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이를 사용하면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

년간 법위반 점수 누계에서 2점 감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전문은 본지 부록 (131면 이하) 참조.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11. 2.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등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고시)을 개정하였다.

금번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주회사 신고양식의 일원화

현행 규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시 설립·전환 유형에 따라 신고양식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형에 따라 신고양식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이는 오히려 신고양식을 복잡하게 하고 번거로움을 야기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시 설립·전환 유형에 관계없이 신고양식 및 첨부서류를 일원화하여 신고양식을 간소화하였다.

2.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의 제출

현행 신고요령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시 첨부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의 의미가 명확치 않으며, 통상

실무적으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까지도 확인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한편, 검토는 세부증빙자료 없이 작년대비 증감 수준 등만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 감사와는 달리 재무제표의 확실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시 첨부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동 고시는 2005. 12. 1.부터 적용되며,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등에 있어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주회사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등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 개정안 전문은 본지 부록 (136면 이하) 참조.

2005. 10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5년 10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5년 11월 1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 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5년 10월중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

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5. 11. 1. 현재 302개로 전월 대비 5개가 증가하였으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5. 11. 1. 현재 699개로 전월 대비 3개가 감소하여, 공정거래법상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5. 10월중 10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8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5. 11. 1. 현재 1,001개로 전월대비 2개사가 증가하였다.

〈2005. 10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5. 10. 1.	편 입				제 외							증감	2005. 11. 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1개)	297	1	4	1	6	1	-	-	-	-	-	1	5	302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55개)	999	1	7	2	10	4	1	-	3	-	-	8	2	1,001

〈2005. 10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10개사

◆ 제외 : 8개사

기업 집 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현 대 자동차	해비치 컨트리클럽(주)	체육시설업	회사설립			
	(주)카네스	자동차전자시스템 관련제품의 연구개발 등	기타 ¹⁾			
에 스 케 이	(주)인디펜던스	광고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지분취득			
	(주)인투젠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지분취득			

● ● ● ● ● ● ●
공 · 정 · 위 · 업 · 무 · 활 · 동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지에스	의정부 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 사업 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	지분취득	-	-	-
금호아 시아나	에이씨아이 상사(주)	무역업	지분취득	(주)크로텍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합병
씨제이	(주)챔프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지분취득	-	-	-
동 국 제 강	탑솔 정보통신(주)	시스템통합 및 시스템유지보수	지분취득	-	-	-
	(주)탑솔 티엔에스	이동통신시스템 운영	기타 ²⁾			
코오롱	스위트밀(주)	베이커리 및 음료제조	지분취득	(주)하나캐피탈	할부금융업	지분매각
한 진	-	-	-	(주)한진중공업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	친족분리
				(주)한국종합기술 개발공사	건설공사 설계감리업	"
				(주)한일레저	각종체육시설 개발업	"
동 양	-	-	-	동양오리온 투자증권(주)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합병
에스티 엑 스	-	-	-	(주)텍스텍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합병
대 성	-	-	-	(주)오산에너지	전기, 가스 및 증기업	"

1) 현대자동차(49.999%)와 Siemens(50.001%) 양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측이 대표이 사겸임 및 임원과반수를 선임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2) 탑솔정보통신(주)이 기업집단 「동국제강」의 계열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탑솔정보통신(주)이 출자(82%)하고 있던 (주)탑 솔티엔에스도 기업집단 「동국제강」의 계열회사로 편입됨.